

이웃사랑정기예금 특약

제1조 【적용범위】

‘이웃사랑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거치식예금 약관’과 조세특례제한법,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예금종류】

이 예금은 거치식 예금이다.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1인 1계좌)

- ① 사회 소외계층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
 -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 3.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 ② 사랑 나눔 실천자
 - 1. 장기 기증(희망 등록)자, 골수 기증(희망 등록)자
 - 2. 헌혈자(5회 이상), 입양자
- ③ 농어촌 지역 주민 : 읍·면단위 지역 거주자

제4조 【가입 및 해지】

이 예금의 가입은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하며, 해지는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하여 한다.

제5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월단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으로 최고한도는 제한이 없다.

제7조 【적용이율】

-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 등에 게시된 기간별 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최고 연 0.5%p 적용한다.

1. 사랑금리 : 아래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0.3%p 제공
2. 보너스금리 : 아래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0.2%p 제공

(연, %p)

우대이율 제공조건		우대이율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사랑금리 (최고 연 0.3%p)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다문화 가정 고객	0.3	0.2
	장기 기증(희망 등록)자, 골수 기증(희망 등록)자, 헌혈자(5회 이상), 입양 실천 고객	0.3	0.2
	읍·면단위 지역 거주자	0.2	0.1
보너스금리 (최고 연 0.2%p)	소외계층의 정기적인 정부지원금을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매월 수령 ※ 정부지원금 : 3개월 이내 수급자(소년소녀가정)의 생계급여, 장애인의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조손가정)의 아동양육비	0.1	
	우체국 장애인복지체크카드 이용고객	0.1	

※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장전결우대이율 적용

제8조 【이율적용방식】

-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신규 가입 시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
- ② 우대이율은 신규 가입일에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1. 「사랑금리」 해당 고객은 각 항목별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제출된 서류는 가입원부와 합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소외계층의 정기적인 정부지원금」은 수급자(소년소녀가정 포함)의 생계급여, 장애인의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한부모 가족(조손 가정 포함)의 아동양육비에 한하며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 통장 및 전산 조회(최근 3개월 거래내역 확인)로 매월 입금됨을 확인하되, 입금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서류로 확인한다.
 3. 「우체국 장애인복지체크카드 이용고객」은 전산 조회를 통해 확인한다.

제9조 【이자계산】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예치일수/365)을 곱하여 단리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0조 【이자지급방식】

- ①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과 월이자지급식으로 한다.
- ② 이 예금의 이자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 이자지급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만기일시지급식의 경우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되 일수에 따라 가감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 단, 자동만기해지 시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 가능하며 만기일과 지급일 사이의 일수는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2. 월이자지급식의 경우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한다.

※ 단, 월이자지급을 자동이체 설정 시 이자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 ③ 예금주는 신규 가입시 제1항에서 정한 이자지급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제11조 【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2조 【만기 후 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

제13조 【분할해지】

- ① 신규 가입금액의 90% 범위 안에서 2회까지(만기포함 3회) 분할해지지급 가능하며, 분할해지지급 후 잔여예금에 대해서는 신규 가입당시의 약정조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단, 잔여예금은 1만원 미만으로 할 수 없다.)
- ② 분할해지는 만기일시지급식에 한하며 신규 가입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가능하다.
- ③ 분할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4조 【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다.

제15조 【기타】

- ① 이 예금은 예금담보대월, 질권설정, 담보제공이 가능하다.

② 이 예금은 양도가 불가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24년 01월 31일부터 시행한다.